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1호 2006년 3월 pp.27~49
한국세무학회

부유세의 도입과 조세공평성

박종국* · 이권석**

〈요 약〉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공평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현재 소득재분배와 조세공평성에 초점을 맞춘 부유세의 도입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유세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외국사례의 소개나 당위성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도입사례를 통해 현실적 모델을 제시하고, 부유세 도입에 따른 현실적 제약요소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정리한 후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부유세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들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과의 소득공평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부유세의 도입이 이러한 정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유세의 도입여부와 지니계수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유세의 도입이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유용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유세도입의 논쟁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부유세, 조세공평성, 소득불평등도

*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전임강사, jkpark@ynu.ac.kr, 053-810-2732, 제1저자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cpakslee@yahoo.co.kr, 공동저자(교신저자)

I. 서 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공평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지역간 소득격차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고, 2005년 전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¹⁾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제고이지만, 보유세 강화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에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나 경기조절용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보다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나, 옹익원칙의 구현에 충실한 조세이기 때문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04). 이러한 비판과 맞물려 현재 소득재분배와 조세공평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부유세도입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세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로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핵심공약 사항으로 최근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 중 하나이다.²⁾

정책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입법자들이 정치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며 당연하다.

Kingdon(1984)에 의하면 보통 정책과정에는 문제흐름(problem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 그리고 정책흐름(policy stream)라는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 흐름이 함께 합류(coupling)되었을 때, 즉 어떤 정책대안이 적절한 정책문제와 합성되고 또 그 대안이 정치적 상황과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열리게 된다.³⁾

현재의 상황은 부유세에 대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노사 분규와 노동 문제의 대두,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문제흐름(problem stream)이 형성되었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과 국민의 사회 쉐신의 요구에 따라 정치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들어졌으며, 빈부격차의 확대를 줄이고 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 정책흐름(policy stream)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부유세에 대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열리게 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부유세가 입법되기 위해서는

- 1)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입법전문)
- 2) 현대경제연구소가 2004년 실시한 「세대갈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부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20대와 30대의 85%, 40대가 78%, 50대이상인 76.9%, 전체 80.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John W. Kingdon (1984: 173)에 의하면 정책의 창은 “어떤 정책의 제안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애호하는 해결책(Pet Solution)을 관철시키거나 혹은 자기들이 가진 특정 문제에 주의가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것은 정책의제의 설정에서부터 최종 정책결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대안이 선택되는 데 필요한 여러 여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음을 뜻한다.

많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한다. 물론 현재 이러한 부유세의 도입필요성 및 부유세의 문제점들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필두로 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유세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외국사례의 소개나 당위성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도입사례 및 부유세 도입에 따른 현실적 제약요소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정리한 후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부유세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들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과의 소득공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부유세의 도입이 이러한 정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평가하는 측도로서 숫지수나 지니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니계수를 통해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유세의 도입여부와 지니계수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유세의 도입이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유용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유세도입의 논쟁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 이론적 배경에서 부유세의 개념과 외국의 도입사례 및 우리나라 부유세도입을 위한 제반 논의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조세공평성에 근거한 부유세도입의 타당성검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유세의 개념 및 의의

일반적으로 부유세(Net Wealth Tax)라 함은 일정액수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순자산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 매년말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정하고, 순자산총액이 일정금액이상일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는 유럽 국가들이나 인도 등의 기타국가들은 부유세의 개념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유세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유세를 먼저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정리하여 부유세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부유세는 1)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국가가 매년 부과하는 국세로서, 2) 개인의(또는 부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한 인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대상이 포괄적이며, 3) 조세의 수직적공평성을 제고하고 개인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국세로 정의된다(노영훈 2004).

일반적으로 부와 재산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또는 근거로 ①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제도의 한계보완 ② 납세능력에 따른 응능과세원칙 ③ 부의 집중문제에 대한 직접적 완화 ④ 정부재공 공공재 등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응익원칙 등이 거론된다(Rosen 2000). 이중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기초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할 경우 미실현 발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 자체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으로 부유세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세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자본이득세는 양도 등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과세가 연기되다가 사망 시에는 과세가 완전히 누락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유세는 과세대상 자산들의 미실현이득이 매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가치증가분이 계속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매년 일정과세기준일 시점에서 평가한 부의 저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저율 과세하는 부유세의 접근 방식은 취득시점과 양도시점간의 불특정기간 중에 누진적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실현시점이 속한 연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 접근방법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즉 실현주의과세원칙에 따른 동결 효과문제를 완화하는 일종의 추계과세라는 발상이다(노영훈 2002). 즉, 순부(총자산-총부채)를 구성하는 자산들에 대해 매년도 과세평가를 한 후 부유세를 부과하면 자산처분을 통해 이들을 실현하기 전이라도 보유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본이득을 과세대상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유세 제도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자본소득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자본이득으로 실현되지 않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통해서만 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과세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2. 외국의 도입사례

부유세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우루과이가 시행 중이고 일본도 잠시 시행해본 경험이 있다. 반면에 유럽은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2년 현재 시행중인 8개 유럽국가 중 비교적 근래에 도입한 스페인(1978), 프랑스(1982, 1989), 향후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핀란드와 더불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가 그 예이다. 이밖에도 오스트리아(1923~1993), 덴마크(1903~1996), 독일(1922~1996), 네덜란드(1982~2000), 아일랜드(1975~1978)등 과거 도입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중 프랑스와 스페인, 노르웨이는 부의 불균등분배완화를 목적으로 수직적공평성을 추구하여 누진세율구조를 택한 국가들이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인과세형 국가들로 상대적으로 세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부유세와 관련하여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조세체계가 비슷한 노르딕국가들로 분류된다.

〈표 1〉 분류별 부유세도입국가

	누진과세형			법인과세형		기 타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도입연도	1989	1978	1914	1913	1970	1910	1920
부과주체	중앙정부	주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납세의무자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개인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세의 형태는 누진과세형과 법인부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누진과세형은 조세의 수직적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법인과세형은 세수확보의 목적이 강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부유세가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누진과세형인 프랑스의 경우 평균 0.57%에 불과하지만 법인부과형인 룩셈부르크의 경우 6.73%로 누진과세형에 비해 총조세수입 중 부유세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는 도입목적에 있어 세수의 확보보다는 수직적공평성의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⁵⁾. 따라서 본 장에서는 법인과세형의 대표적 국가인 룩셈부르크와 비교하여 누진과세형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국가별 총조세대비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

		1998	1999	2000	2001	2002
누진과세형	프랑스	0.59	0.56	0.48	0.73	0.51
	스페인	0.50	0.52	0.56	0.52	0.47
	노르웨이	1.17	1.23	1.18	1.16	1.20
법인부과형	룩셈부르크	6.02	6.93	7.35	6.85	6.00
	아이슬란드	1.93	1.73	2.07	2.18	2.13
기타	핀란드	0.11	0.15	0.29	0.20	0.18
	스웨덴	0.59	0.79	0.69	0.56	0.42

자료 : OECD

- 5) 부유세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하는 대로 과세대상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한다면 대상자는 대략 2만명에서 5만명 사이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내국세 납세자의 0.27% 내지는 0.66%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의 도입목적은 세수확보보다는 수직적공평성의 제고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사례

	프랑스	룩셈부르크
도입연도	- 1982도입, 1987폐지, 1989재도입	- 1913
부과주체	- 중앙정부	- 중앙정부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	- 개인 - 거주자 : 전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순자산	- 개인 및 법인 - 거주자 : 전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순자산 - 세대별과세(부부 및 미성년자녀포함)
대상자산 및 면세점	- 동산: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거주주택, 영업권	- 부동산 - 은행예금 및 기타채권, 주식 : 75,000유로 - 보험계약 : 75,000유로 - 보석 : 12,000유로 - 귀금속 : 1,250유로 - 예술품 및 수집품 : 25,000유로
과세표준 및 기초공제	- 세대당 27만유로를 초과하는 순자산	- 전세계자산-부채 - 기초공제 : 1인당 2,500유로
세율 및 과세상한	- 누진세율구조 0.55%~1.80% 6단계초과누진세율 - 과세상한 : 소득세와 부유세합계액이 전년 도 연간 총소득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인 및 법인:0.5%
평가방법 및 주기	- 1년(과세연도1월1일기준) · 개인소유동산 및 부동산 : 시장가격 · 주식 : 거래가격 · 생명보험 : 상환가액 · 연금 : 실수령액 · 농지 : 시장가격 · 임야 : 시장가격의 75%	- 1년(1월1일) - 매3년마다 특별선언 및 평가에 의해 과 세하며, 그 중간에도 개정된 평가를 수행
비과세감면 및 최고세율	- 비과세 : 주식이나 지분 - 소득세최고세율 : 49.58%	- 소득세최고세율 : 38%

자료 : 노영훈(2004)의 “부유세도입과 세제개혁방향” <표 2>와 <표 3> 수정보완

프랑스의 부유세는 1989년 1월1일부터 재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괄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인세이며,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고,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채를 공제하고 업무용자산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부유세의 적용범위는 납세자의 순재산가액이 720,000유로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재산을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이때 부유세는 세대별로 과세되는데 개인납세의무자와 부양가족 및 미성년자, 장애자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자산은 건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업 또는 산업 상 기업, 농업기반, 영업권, 가구, 동산, 채권, 보석류 등으로 세대구성원의 모든 재산이 포함 된다.⁶⁾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과세대상 연도의 1월1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이러한 시가는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되는 해의 1월1일의 완전경쟁상태의 가치를 말한다.⁷⁾ 동산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평균거래가격에 의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는 판례에 따라 산술적인 가치이외에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에서 각종 요소를 참고하여 결정한다.⁸⁾ 이 밖에 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지불되지 않는 이자 등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부유세 과세대상 세대구성원의 부채액은 부유세 산정 시 공제되며 비과세 물건과 관련된 부채는 공제되지 않고 부채의 존재유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총재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⁹⁾ 다만 부유세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소득금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납부세액을 6월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는 사회당의 집권으로 부유세를 도입하였으나(1982) 정권교체를 통해 1987년 폐지되었다가 고소득자의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다시 도입되는 등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세제이다. 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누진과세형으로써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목적 보다는 수직적공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조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 중인 부유세의 성향 및 도입 목적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부유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프랑스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6) 이에 반하여 비과세 대상건물은 1) 산업, 상업, 가내수공업, 농업 또는 자유직업에 필요한 사업용 재산 2) 장기간 동안 농토의 임대 대상이 되는 농지 3) 골동품, 예술품 및 수집품 4) 지적재산권 5) 특허권 및 상표권 7) 산림 8) 장기간동안 농토의 임대대상이 되는 토지 9) 연금 등이 있다.
- 7)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거주하는 주된 주택은 시가의 20%를 공제하고 있다.
- 8) 산술적 가치 이외에 참고하는 요소는 비교대상의 거래일과 유사한 거래일의 현재의 교환가치, 주식의 수익성 및 이익의 중요성 비교, 기업의 활동성, 기업의 신용성, 경제적 상황 등이다.
- 9) 프랑스의 부유세율 (2002. 4. 1. 현재)

1유로 = 1146.6원(2002. 7. 31. 현재)

과세표준(유로)	과세표준(원 환산)	세율(%)
72만이하	8억 2,500만 이하	0
72만 초과 - 116만 이하	8억 2,500만 초과 - 13억 3,000만 이하	0.55
116만 초과 - 230만 이하	13억 3,000만 초과 - 26억 3,700만 이하	0.75
230만 초과 - 360만 이하	26억 3,700만 초과 - 41억 2,700만 이하	1.00
360만 초과 - 690만 이하	41억 2,700만 초과 - 79억 1,100만 이하	1.30
690만 초과 - 1,500만이하	79억 1,100만 초과 - 171억 9,900만 이하	1.65
1,500만 초과	171억 9,900만 초과	1.80

3. 우리나라의 부유세도입에 관한 제반논의

가. 부유세도입의 긍정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다.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에는 3.3배였으나, 2001년에는 5.4배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0이면 극단적 평등, 1이면 극단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바, 1997년 0.314에서 2001년 0.355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민주노동당 2005)

소득의 불평등도 해소는 조세의 기능 중 주요부분을 차지한다. 즉, 조세를 징수한 이후에 소득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01년도 세금 전에 지니계수가 0.355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한 후의 지니계수가 0.347로 소득불평등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민주노동당 2005).

또한 현재의 소득과세의 현실을 보면 소득 종류에 따라 포착률의 차이가 매우 크다. 예컨대 근로소득은 거의 100% 포착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50% 이하이며, 금융소득은 각종 예외조치로 포착률이 낮다.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은 이제까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여기에 부동산이나 증권 투기 등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아예 비과세되거나, 과세되더라도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 게다가 부정부패를 비롯한 지하경제의 소득은 아예 포착할 수가 없다. 이처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엄청난 소득들이 축적되어 개인의 부를 형성하고 다시 거대한 소득을 창출하며, 또한 상속증여를 통해 세습되어 우리 사회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부유세도입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소득불평등완화와 조세공평성 측면이외에도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서도 부유세는 의미를 지닌다. 즉, 국민이 보다 많은 사회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재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성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6%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사회복지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 부유세를 통하여 징수된 조세를 사회복지예산에 사용한다면 사회복지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부유세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의 약 0.04%~0.1% 정도에서 건을 수 있는 조세 수입 규모는 연 11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하여 공교육과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결식아동,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유세는 우선 부와 소득의 집중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득세의 포착률을 높이는 세정의 보완 수단으로서도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나. 부유세도입의 부정론

앞서 논의한 부유세도입의 긍정론 못지않게 부유세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는 기술적인 것에서, 일부는 철학적인 것까지 그 수위가 매우 다르다. 2004년 5월 개최된 세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대상자의 재산과 채무 파악이 어렵고 정확히 평가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조세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형평성을 위배한다.” 라고 하며 부유세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도 “기존 조세제도 틀 안에서 형평과 효율을 추구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또한 그는 “땅이나 건물 등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가 쉬워 금융자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투기가 훨씬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무려 31개나 되는 세목으로 이미 충분히 복잡한 과세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것보다 목적세를 정비하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유세도입의 반대 입장에 대한 논거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소유재산파악의 어려움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득에 대한 형태와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다양하여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숨기려 하는 명시거부 현상이 사회 속에 팽배해 있다. 이는 특히 부유층이나 전문직,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심한 편이다. 공평한 과세는 정확한 소득 파악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정확한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세 도입은 오히려 정직한 재산신고자에게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비공개법인이나 조합 등의 형태로 보유하는 개인의 재산 또는 화폐 같은 동산 등의 포착이 어렵고, 납세자와 자산소유자의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자산평가의 어려움이다.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개별 재산의 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치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 그 가격이 너무 낮게 인정되거나 혹은 너무 높게 인정될 위험이 있어 공평을 해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조세의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낮게 인정될 위험이 존재하고, 골동품이나 서화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문제를 들고 있다.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과세표준에 부동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유세인 재산세·종토세와 과세표준이 중복되므로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¹⁰⁾

10) “이중 과세는 동일한 납세 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 과세하는 것”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부유세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부유세 도입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논의

가. 재산과세의 현실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유세도입의 기본적인 걸림돌은 명시거부로 인한 재산과세의 어려움이 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현행 금융실명제법으로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차명거래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효성 있게 정착된 경우 차명거래를 방지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탈세, 탈법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적용되는 자산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으로 제한하여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의 법률적 정비 필요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경우 보다 현실성 있는 조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민주노동당 2005).¹¹⁾

나. 재산평가의 현실화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개별 재산의 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과세표준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시장 가치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 그 가격이 너무 낮게 인정되거나 혹은 너무 높게 인정될 위험이 있어 공평을 해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조세의 중립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낮게 인정될 위험이 존재하고, 골동품이나 서화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부유세도입의 성공여부는 자산평가제도의 적정성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적절한 평가 체계의 구축은 상속 및 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등 재산관련 세목에 대한 적정과세의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부담의 형평과 적정세율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자산평가기준 3가지가 각각 적용되는 세목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적절한 자산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¹²⁾

11) 민노당은 이를 통해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른 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재산을 되찾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과징금과 기타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재산과약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감정평가액(상속증여세)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실제 예로 영국은 내국세청(Inland Revenue) 평가실(Valuation)에서 85개의 지방사무소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전체에 대한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공인된 평가사에게 평가업무를 전담시켜 자산가치의 정확한 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평가전담기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상설기구가 설치된 이후 적절한 자산평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일원화해야 한다. 즉 2005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이때부터 유상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추후 국세와 지방세 과세당국 양쪽에서 신고액을 대사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자산평가 전담기구가 맡으면 될 것이다.

민노당은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가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제도상에서의 가장 걸림돌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로 들고 있다. 즉,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제도상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액을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주택양도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면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자산을 실거래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¹³⁾

이상의 부동산관련 조세의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큰 비용 없이 실거래가액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실제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관법률의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¹⁴⁾

아울러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시가를 파악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시가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준용한다면 비록 정확한 주식 가격을 나타내지 못할 수는 있으나, 일정하게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¹⁵⁾

13) 민주노동당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택양도소득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도차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채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억원을 소득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서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현행제도상 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이 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15)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것으로 하고 있다.

다. 이중과세문제 현실화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과세표준에 부동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유세인 재산세·종토세와 과세표준이 중복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재산세(Real Estate Tax)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 부유세와 재산세의 병존은 큰 문제는 없으며, 특별히 재산세액을 부유세의 세액공제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과세하고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유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양세의 병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정확한 자산평가를 위해 실거래가기준평가를 도입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보다 과세표준이 급상승하여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¹⁶⁾ 이를 위해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1/2 정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재산세의 경우 비례세이며 이는 우리나라 종합토지세처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토지자산의 중요성 및 종합토지세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가 사실 상 부족하나마 부유세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부유세납부액에서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도록 조정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Ⅲ. 조세공평성에 근거한 부유세도입의 타당성검토

1. 부유세도입과 조세공평성

현재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당위성과 현실적 제약간의 소모적 논쟁에 그치고 있다. 즉, 경상적인 소득이 아닌 부를 과세표준으로 경상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의 도입으로, 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며 자산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증가된다는 이론적 측면의 형평성 제고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유세의 목적인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부유세의 도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부유세 논의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의 주요 기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누진과세나 상속세,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각종 사회복지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함으로써

16) 노영훈 저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과세표준이 2.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득불평등, 즉 빈부격차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이론과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조세의 공평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논의 될 수 있는데, 수직적공평성(vertical equity)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공평성이란 각 계층이 가진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인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성이란 같은 능력을 가진 계층이 같은 조세부담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전규안 1997).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가치판단과 관련되는 정의의 원칙인 것이다. 경제학자들도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는 원칙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쉽게 적용될 수 없었다. 조세제도의 수평적 공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에 의한 상대적 편익을 포함해서 비교집단이 동일한 후생을 누리고 있는가를 측정하여야 한다.

수직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각기 다른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수직적 공평은 동일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사회정의개념에 부합되게 적절한 차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개념으로서 누진세 또는 역진세의 세율구조가 대부분 수직적공평성을 전제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에는 3.3배였으나, 2001년에는 5.4배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1997년 0.314에서 2001년 0.355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준다(성명재 2002). 이러한 경제현실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세의 수직적공평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부유세도입이라는 정책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 대한 논쟁에 앞서 과연 부유세의 도입이 소득의 재분배와 공평성 제고에 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들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과의 소득공평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부유세의 도입이 이러한 정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조세공평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조세공평성의 측정과 관련한 연구와 세법규정의 변경 및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가. 조세공평성 측정

조세공평성을 분석하는 척도에는 변동계수, 잔차변동계수, Gini계수, Atkinson지수, B-S지수, Suits 지수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이들 척도를 이용한 연구에서 선행연구자들은 수평적 공평성분석을 위하여 주로 변동계수와 잔차변동계수를 이용하고, 수직적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tkinson지수

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아우르는 척도로서 Gini계수와 B-S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척도는 연구자별로 서로 상이하고 수직적·수평적공평성의 척도로서의 적합성여부에 관하여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Grasso and Frishmann(1992)은 수평적 공평성의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변동계수는 수평적 공평성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하는 문제점을 들어 잔차변동계수가 더 나은 척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개별납세자의 자료를 사용해 변동계수와 잔차계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조세부담 능력률의 변동계수는 부담능력이 동일하지 않은 소득자를 동일부담능력을 갖는 소득자로 잘못 분류시 수평적 불공평성을 과대평가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득금액과 세부담액사이의 관계에 대해 회귀모형을 설정한 다음, 여기서 산출되는 잔차에 대한 변동계수를 공평성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eetharaman and Lye(1995)는 수직적공평성 척도로 많이 사용되는 Suits지수 역시 특정집단 내의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율체계의 누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수직적 공평성의 척도들의 특징, 속성 및 한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비교분석하였다.

박태규와 문형표(1987)는 수평적공평성의 척도인 Suit지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Kakwani지수를 논의 하였다. Suits지수는 그 값이 같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세부담의 분포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두개의 세부담곡선이 서로 교차할 때 평균세부담이 동일하다는 왜곡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세법규정의 변경 및 새로운 조세의 도입과 조세공평성

Madeo and Madeo(1981)는 TRA76과 1976년 개정세법인 RA78의 최저한세규정이 수평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납세자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조정소득에 따라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의 납부세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가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nderson(1985)은 TRA76, TRA78, TEFRA82의 개정세법규정 중 어느 규정이 수평적공평성을 가장 많이 향상시켰는가를 분석하였다. 공평성 지표로는 변동계수를 사용하였으며 1978년의 실제 소득세 자료의 포괄이익을 기준으로 납세자들을 28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TRA76의 가산방식최저한세규정이 변동계수의 평균감소율 및 감소율의 크기에 따른 순위 모두에 있어서 수평적 공평성을 가장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양현 등(1999)은 1990년 12월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이후 감면제도의 유효성 및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수평적 공평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과 조정유효법인세율의 Gini계와 변동계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개정 후인 1991년 이후 조세감면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최저한세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수평적공평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표본그룹에 따라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박춘래와 장호영(1994)은 1992년 처음으로 시행된 최저한세가 법인세의 수평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저한세가 시행되기 전 연도인 1991년과 시행된 연도인 1992년의 부산·경남지역의 실제법인세 과세자료 160개를 10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최저한세 적용 전후의 변동계수와 Gini계수를 계산하였다. 집단분류기준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의 세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별로 10%순으로 구분하여 10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최저한세 적용에 의해 집단별 변동계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Gini계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최저한세 도입이 과세공평성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Ricketts(1990)는 1980년대의 세율인하와 사회보장세 확대에 따른 공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세 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세의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의 역진성효과가 개인소득세제의 개편에 다른 세 부담의 누진성 효과보다 앞서 있고, 수평적 공평성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세의 증가가 1986년의 세제개형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에 공헌하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3. 부유세도입이 조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부유세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Logistic Regression)모형을 사용하였다.

$$\text{Model I : } WT = \alpha_0 + \alpha_1 GINI + \varepsilon$$

$$\text{Model II : } WT = \alpha_0 + \alpha_1 GINI + \alpha_2 GAAP + \alpha_3 GNP + \varepsilon$$

WT = 부유세도입여부더미변수

GINI = 지니계수

GAAP = 회계기준수준변수

GNP = 1인당 국민총생산

부유세 도입이 조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변량분석에서는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와 도입하지 않은 국가간에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분배구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나 단일변량분석은 분석과정에서 변수생략의 문제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성장수준과 제도적수준의 변수를 고려하여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해당국에 부유세가 도입되었는지 아닌지를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나타내고 있다. 즉, 부유세가 도입되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된다.

독립변수로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아우르는 Gini계수를 사용하여 (박춘래와 장호영 1994; 이양현 등 1999)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하게 된다.¹⁷⁾

그리고 회계기준이 발달할수록 개인소득세 내지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체계로도 과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회계기준수준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소득공평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선택적인 판단에 따라 경제성장의 척도로 GNP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부유세가 조세불평등을 해소 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면 위 회귀식의 결과 부유세도입더미변수와 지니계수와는 음(-)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표본의 선정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제집단을 자본이득세 과세국가로 한정하였다.¹⁸⁾ 이들 집단으로 한정된 이유는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한 경제 내에서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고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가 조세공평성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조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부유세도입이 타당성을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을 자본이득세과세국가로 한정하였으며 표본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분석표본

자본이득세과세국가 중 부유세도입국가		순수자본이득세과세국가
부유세도입국가	부유세경험국가	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1923~1993)	싱가폴, 태국, 브라질, 터키
아이슬란드	덴마크(1903~1996)	멕시코, 콜롬비아, 이태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1975~1978)	필리핀, 포르투갈,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	일본(1950~1953)	대만,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스웨덴, 스위스		이집트

- 17) 사회구성원 n 명의 소득이 $x_1, x_2, x_3, \dots, x_n$ 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지니계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구해진다.

$$GINI = \frac{1/n(n-1) \sum_{i=1}^n \sum_{j=1}^n |x_i - x_j|}{2M}$$

M : 평균소득

n : 조사대상 납세자수

$X_i - X_j$: i, j 의 소득금액차이

n 명의 사람들을 순서를 따져서 두 명씩 짝 지운다고 할 때 모두 $n(n-1)$ 개의 짝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X_i - X_j$ 는 임의의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격차를 의미하므로 이를 모두 더하여 $n(n-1)$ 로 나누면 평균적인 소득격차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분자는 결국 그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격차를 의미하게 되고, 지니계수는 평균소득격차와 평균소득과의 비율로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

- 18) 자본이득세과세국가는 최소한 개인용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나 개인소득세내에서 과세하면서 부동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노영훈 2002).

최근 부유세를 폐지한 국가를 포함하여 최대한 표본수를 확장하기 위해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연도를 1996년으로 한정하였다¹⁹⁾.

다. 실증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4>는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유세도입국가와 순수자본이득세과세국가를 비교해 보면 부유세 도입국가가 순수자본이득세과세국가에 비해 GAAP과 GNP는 높았으며, GINI계수는 낮았다. 이를 통해 부유세도입국가일수록 도입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Panel A : 전체표본

변수	평균	표준편차	Q ₁	중위수	Q ₃
GINI	0.3341	0.1276	0.2698	0.3220	0.3764
GAAP	63.77	12.31	60.00	64.00	74.00
GNP	14639.19	10069	3140.00	18060.00	23560.00

Panel B : 부유세도입국가

변수	평균	표준편차	Q ₁	중위수	Q ₃
GINI	0.2846	0.0392	0.2492	0.2810	0.3129
GAAP	69.38	7.85	62.50	66.50	76.25
GNP	25310.00	2688.05	23855.00	26350.00	27325.00

Panel C : 순수자본이득세과세국가

변수	평균	표준편차	Q ₁	중위수	Q ₃
GINI	0.3513	0.0784	0.2746	0.3374	0.4188
GAAP	61.83	13.10	55.00	64.00	71.00
GNP	10927.61	8953.89	2930.00	9130.00	19740.00

(주)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증)

변수의 정의 : GINI는 소득불평등도의 대용치(지니계수), GAAP은 회계제도의 발달정도, GNP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다

19) 부유세경험국가 중 독일(1922~1996)과 네덜란드(1982~2000)는 자본이득세도입국가가 아니므로 분석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European Tax Handbook, Individual Taxes 및 OECD 홈페이지, 그리고 OECD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각 국가별 통계청에서 추출하였다.

<표 5>는 주요변수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AAP 및 GNP와 GINI계수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GNP와 GAAP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분석(Pearson)

Panel A : 전체표본

변수	GINI	GAAP	GNP
GINI			
GAAP	-0.316*		
GNP	-0.801***	0.517**	

Panel B : 부유세도입국가

변수	GINI	GAAP	GNP
GINI			
GAAP	0.348		
GNP	0.001	0.238	

Panel C : 순수자본이득세과세국가

변수	GINI	GAAP	GNP
GINI			
GAAP	-0.362		
GNP	-0.759***	0.481*	

(주)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증)

변수의 정의 : *GINI*는 소득불평등도의 대용치(지니계수), *GAAP*은 회계제도의 발달정도, *GNP*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다

(2) 부유세도입여부와 분배구조간의 로짓분석

부유세의 도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분배구조, 회계제도, 성장수준으로 보고 이들 요인들과 부유세도입여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부유세도입여부와 분배구조간의 로짓분석

$$\text{Model I: } WT = \alpha_0 + \alpha_1 GINI + \varepsilon$$

$$\text{Model II: } WT = \alpha_0 + \alpha_1 GINI + \alpha_2 GAAP + \alpha_3 GNP + \varepsilon$$

Variables	Predicted Sign	Model I	Model II
		Coefficient Estimate	Coefficient Estimate
Intercept	?	7.661	-70.355
GINI	-	-0.737**	-0.923**
GAAP	-		0.320
GNP	+		16.310
X ²		25.196	29.279
N		31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증)

변수의 정의 : WT 는 부유세도입여부(도입한국가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GINI$ 는 소득불평등도의 대용치(지니계수), $GAAP$ 은 회계제도의 발달정도, GNP 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다

분석결과 α_1 의 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부유세도입할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분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이 부유세의 도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으로써 부유세의 도입이 분배구조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분배구조가 우량한 국가들이 부유세를 도입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두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방향성은 위 모형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회계기준수준변수는 예상한 것과는 달리 소득불평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회계기준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개인소득세 내에서 정상적으로 분배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GNP 가 높을수록 부유세를 도입할 확률이 높았다. 결국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경제성장 단계 이후에 분배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부유세 도입여부와 GNP 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현재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빈부격차의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보유세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제고이지만, 보유세 강화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다. 보유세의 강화가 타당성을 갖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부동산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²⁰⁾

반면에 부유세의 경우 부동산 및 기타 금융자산 등 포괄적인 총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인 보유세의 특징과는 달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함으로써 원본잠식의 우려도 극복할 수 있는 조세이다²¹⁾. 하지만 이러한 부유세도입의 당위성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부유세도입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서 한걸음 나아가 부유세도입이 과연 그 목적을 부합할 수 있는 조세인지를 분석하였다.

부유세 시행국과 미시행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행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미시행국의 소득불평등도 보다 낮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부유세가 소득불평등도의 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유세도입의 논쟁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제약 상 특정연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는 부유세도입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보다 정교한 실증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부유세도입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20) 유가증권 등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보유단계에서 세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부동산에는 지방세로서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마저 부과되고 있다.

21)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세원을 재산가치의 평가액으로 보고 세원이 풍부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의 세원은 납부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보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의 경우 소득을 기반으로 납세한다. 결국 납세자의 소득이 재산세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원본잠식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물수적인 조세로 전락할 수 있다(최명근과 김상겸 2004)

참고문헌

- 국중호.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 김유찬.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 노영훈. 1996.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노영훈. 2002.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 노영훈. 2003. “부동산관련조세의 개선방향”. 개원2주년기념심포지움, 한국감정평가연구원.
- 노영훈. 2004. “부유세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민주노동당. 2002. 「부유세도입의 필요성」. 민주노동당정책자료집.
- 민주노동당. 2005. 「부유세실현의 1단계－공평과세, 투명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민주노동당정책자료집.
- 박춘래. 1999. “소득세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세무학연구」(제18호), 한국세무학회.
- 박춘래·장호영. 1994.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분석”. 「회계학연구」(제19호), 한국회계학회.
- 박태규·문형표. 1987. “수치지수와 조세부담의 누진도측정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창간호), 한국재정학회.
- 성균관대경제연구소. 2004. 「부유세도입의 타당성과 세제개혁의 방향」. 정책토론회자료집.
- 성명재.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도시가계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안창남.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 이양현·김지범·김창수. 1999.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이 조세감면비율과 수평적 공평성에 미친 영향”. 「세무학연구」(제14호), 한국세무학회.
- 이인실. 2003. 「자본이득과세연구」. 한국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 임용주·김정완. 1996. “서울단계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제43집 4호), 한국경제학회.
- 전영준·한도숙·이철인. 1998. 「포괄적 소득과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전규안. 1997.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제22권 4호), 한국회계학회.
- 정윤택. 2000. “법인세부담의 공평성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제5권제1호), 대한회계학회.
- 최 광. 1996.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 1999.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중장기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Anderson, K. E., 1985. “An Equity Analysis of the Minimum Tax Provision: An Empirical Study”. *The Accounting Review*(July) : 357-364.
- Grasso, L. P. and P. J. Frischmann. 1992. “Measuring Horizontal Equity: A Regression Approac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Fall) : 123-133.
- Kingdon, John W.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Glenview, Illinois; Scotts Foresman and company.
- Madeo, S. A. and L. A. Madeo. 1981. “Some Evidence on the Equity Effects of the Minimum Tax on Individual Taxpayers”. *National Tax Journal*(DEC) : 457-463.
- OECD. 1988.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 Ricketts, R. C. 1990. "Social Security Growth Versus Income Tax Reform: an Analysis of Progressivity and Horizontal Equity in the Federal Tax System in the 1980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Spring) : 34-50.
- Seetharaman, A. and G. S. Iyer. 1995. "A Comparision of Alternative Measures of Tax Progressivity: The Case of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Spring)
- Zodrow, G. R.. 1998. "Economic Analysis of Capital Gains Taxation: Realization, Revenues, Efficiency and Equity". *Tax Law Review* : 419-527.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and Tax Equity

Jongkook Park* · Kwonsuk Lee**

〈Abstract〉

Restructuring on overall economy has been proceede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The interest on income redistribution and equality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magnified specially after the launching of the Roh mu hyun administration. Along the request of this trend,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focused on income redistribution and tax equity is proposed. However, the discussion on wealth tax has been stagnant on the level of introduction of cases in foreign countries or consumptive debate on whether it is right or not.

This study proposes realistic model after studying the examples of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in foreign countries, reviews the general discussions on restrictive factors in real and positively analys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is right on the aspect of tax equity.

It also indirectly verified whether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is relevant to the policy purpose through examining the divergence of the income equity between the countries with wealth tax and the countries with no wealth tax.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e meaningful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and Gini coefficient. It is indirectly verified that the countries with wealth tax has low degree of income inequity compare to the countries with no wealth tax.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is useful measure for alleviating the degree of income inequity and furnishes a positive material on the debate over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Key words> wealth tax, tax equity

* Full-Time Lecturer, Yeungnam University

** CPA, Daejoo Accounting Corporation